



미래 50년을 준비하는
새로운 전통의 시작



2027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

2026. 5.



국립공주대학교
Kongju National University
[입학본부]

※ 본 요강에 수록된 내용 중 일부가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최종 원서접수 전 반드시 국립공주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https://ipsi.kongju.ac.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 차

1. 입학전형 일정	1
2.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2
3. 지원 대상 및 지원 자격	4
3-1. 입학 정원의 2%이내 모집	5
가. 재외국민 및 외국인	5
3-2. 정원 제한 없는 모집	8
가. 전 교육과정 해외 이수자	8
나. 북한이탈주민	10
3-3. 코로나19 관련 및 중동지역 상황 관련 특례	11
4. 지원 절차 및 방법	12
5. 제출 서류	13
6. 전형 방법 및 선발 원칙	15
7. 합격자 발표	17
8. 합격자 등록	17
9. 전형료	18
10. 지원자 유의사항	18
1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항	20
※ 각종서식	21

- 본 모집요강 내 전형 중 1개 모집단위에 1회 지원 가능(복수지원할 수 없음)
- 재외국민 및 외국인전형(입학정원의 2% 이내) 지원시 유의사항: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제외) 수시 모집의 모든 전형에서 지원횟수 6회를 초과하여 지원할 경우 접수취소 처리됨.
- ※ 북한이탈주민 및 전교육과정 해외이수자 전형은 수시모집 6회 지원 제한 제외

1. 입학전형 일정

구분	일시	안내사항
입학원서 접수	2026. 7. 6.(월) 10:00 ~ 7. 10.(금) 17:00	○ 국립공주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https://ipsi.kongju.ac.kr) ※ 온라인 원서접수만 실시 ※ 원서접수(전형료 결제) 완료 후에는 지원사항 변경 및 접수취소 불가
서류 제출	2026. 7. 6.(월) 10:00 ~ 7. 24.(금) 18:00까지 도착분	○ 충남 공주시 공주대학로 56 국립공주대학교 입학본부 입학과 (대학본부 208호) ※ 인터넷 원서접수 후 제출 서류는 등기우편 또는 택배로 보내거나 직접 방문하여 제출[방문 제출은 평일만 가능하며, 점심시간(12:00~13:00)은 접수 불가] ※ 제출 서류 미비 시 지원 자격 부적격 처리 ※ 제출 서류 도착 확인 및 서류 미비에 대한 책임은 수험생 본인에게 있으니 전형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제출서류 이상 유무 및 도착 확인 요망
면접고사 대상자 발표	2026. 8. 18.(화) 이전	○ 국립공주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https://ipsi.kongju.ac.kr)에 면접 대상자 및 장소 등 세부사항 공고 ※ 개별 통보 없음
면접고사	2026. 8. 26.(수) 10:00 ~	○ 면접고사 시 신분증, 수험표 필수 지참 ※ 국외 체류자 중 사전신청자에 한하여 비대면 화상 면접 실시
합격자 발표	2026. 9. 11.(금) 18:00 이전	○ 국립공주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https://ipsi.kongju.ac.kr) ○ 총원합격자 발표 및 등록(2026. 12. 24.(목) ~ 12. 29.(화)) - 세부 일정은 추후 대학 입학안내 홈페이지 안내 예정
합격자 문서등록	2026. 12. 21.(월) 09:00 ~ 12. 23.(수) 16:00	○ 합격자는 등록기간 내 문서등록을 반드시 하여야 하며, 기간 내 미등록 시 합격취소 ※ 문서등록 방법은 국립공주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 별도 안내
합격자 최종 등록금 납부	2027. 2. 10.(수) 09:00 ~ 2. 12.(금) 16:00	○ 대학 입학안내 홈페이지에서 고지서를 개별 출력하여 등록 마감 시간 전까지 등록금 납부

※ 상기 전형 일정은 본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입학안내 홈페이지(<https://ipsi.kongju.ac.kr>)에 공고함

2.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단위: 명)

캠퍼스	대학	계열	모집단위	입학정원	모집인원		비고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전교육과정 이수자, 북한이탈주민전형	
공주 캠퍼스	인문사회 과학대학	인문· 사회계	영어영문학과	24	2명 이내	제한 없음	
			중어중문학과	27	2명 이내	"	
			불어불문학과	18	1명 이내	"	
			독어독문학과	18	1명 이내	"	
			사학과	18	1명 이내	"	
			지리학과	18	1명 이내	"	
			경제통상학부	39	3명 이내	"	경제학전공 국제통상학전공
			경영학과	22	2명 이내	"	
			관광경영학과	26	2명 이내	"	
			관광&영어통역융복합학과	26	2명 이내	"	
			행정학과	25	2명 이내	"	
			법학과	24	2명 이내	"	
			사회복지학과	24	2명 이내	"	
	자연과학 대학	자연계	데이터정보물리학과	26	2명 이내	"	
			응용수학과	25	2명 이내	"	
			화학과	25	2명 이내	"	
			생명과학과	27	2명 이내	"	
			지질환경과학과	24	2명 이내	"	
			대기과학과	24	2명 이내	"	
			문화재보존과학과	15	1명 이내	"	
			의류상품학과	15	1명 이내	"	
		예·체능계	스포츠과학과	17	1명 이내	"	
	간호보건 대학	자연계	간호학과	64	6명 이내	"	
			보건행정학과	36	3명 이내	"	
			응급구조학과	26	2명 이내	"	
			의료정보학과	27	2명 이내	"	
	예술대학	예·체능계	게임디자인학과	31	3명 이내	"	
			가구리빙디자인학과	17	1명 이내	"	
			도자문화융합디자인학과	17	1명 이내	"	
			주얼리·금속디자인학과	17	1명 이내	"	
			만화애니메이션학부	35	3명 이내	"	카툰믹스전공 애니메이션전공
			무용학과	22	2명 이내	"	
			영상학과	31	3명 이내	"	
	본부소속	자연계	국제학부	20	2명 이내	"	국제금융공학전공

캠퍼스	대학	계열	모집단위	입학정원	모집인원		비고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전교육과정 이수자, 북한이탈주민전형	
천안 캠퍼스	천안공과 대학	공학계	전기전자제어공학부	97	9명 이내	〃	전기공학전공 전자공학전공 반도체정보공학전공
			정보통신공학과	20	2명 이내	〃	
			스마트정보기술공학과	19	1명 이내	〃	
			컴퓨터공학과	30	3명 이내	〃	
			소프트웨어학과	29	2명 이내	〃	
			기계자동차공학부	84	8명 이내	〃	기계공학전공 기계설계공학전공 기계시스템공학전공
			미래자동차공학과	20	2명 이내	〃	
			스마트인프라공학과	44	4명 이내	〃	
			도시·교통공학과	17	1명 이내	〃	
			건축학과	21	2명 이내	〃	(5년제)
			그린스마트건축공학과	21	2명 이내	〃	
			화학공학부	45	4명 이내	〃	화학공학전공 공업화학전공
			신소재공학부	63	6명 이내	〃	나노재료공학전공 고분자공학전공 금속재료공학전공
			디자인컨버전스학과	37	3명 이내	〃	
			환경공학과	21	2명 이내	〃	
			산업공학과	19	1명 이내	〃	
			광공학과	18	1명 이내	〃	
			디지털융합금형공학과	13	1명 이내	〃	
			지능형모빌리티공학과	25	2명 이내	〃	
	본부소속	공학계	인공지능학부	35	3명 이내	〃	
예산 캠퍼스	산업과학 대학	인문· 사회계	지역사회개발학과	12	1명 이내	〃	
			부동산학과	12	1명 이내	〃	
			산업유통학과	12	1명 이내	〃	
		자연계	식물자원학과	20	2명 이내	〃	
			원예학과	21	2명 이내	〃	
			동물생명과학과	21	2명 이내	〃	
			지역건설공학과	16	1명 이내	〃	
			스마트팜공학과	16	1명 이내	〃	
			산림과학과	21	2명 이내	〃	
			조경학과	16	1명 이내	〃	
			식품영양학과	17	1명 이내	〃	
			외식상품학과	12	1명 이내	〃	
			식품공학과	15	1명 이내	〃	

캠퍼스	대학	계열	모집단위	입학정원	모집인원		비고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전교육과정 이수자, 북한이탈주민전형	
			특수동물학과	17	1명 이내	"	
			수산생명의학과	25	2명 이내	"	
합 계					54명 이내	제한 없음	

※ 비고란의 세부전공은 학칙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전형 모집인원은 당해학년도 전체 입학정원[교육부 고시-"첨단(신기술)분야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기준 고시"에 따른 편입학여석 활용 첨단학과 입학정원 제외]의 2%이내(54명)이며, 합격자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전체 합격자가 최대 선발가능인원(54명)을 초과할 경우, 모집단위별로 모집인원을 조정함

3. 지원 대상 및 지원 자격

입학정원 2%이내 모집 (모집단위별 10% 이내)	「고등교육법 시행령」제29조제2항제2호 - 재외국민 및 외국인(제6호와 제7호에 따른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제외) • 국외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한 자의 자녀
입학정원 제한 없는 모집	「고등교육법 시행령」제29조제2항제6호 및 제7호 - 북한이탈주민 -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학교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외국인, 귀화허가를 받은 결혼이주민 • 북한이탈주민 • 전 교육과정 국외 이수 재외국민 • 전 교육과정 국외 이수 외국인 • 전 교육과정 국외 이수 후 귀화허가를 받은 결혼 이주민

※ 이중(복수)국적자: 「국적법」 제11조의 2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으로 지원해야 함

※ 부·모·지원자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외국인 특별전형"(국제교류과 담당 041-850-0862)으로 지원

3-1. 입학정원의 2%이내 모집

가. 재외국민 및 외국인

1) 기본 학력조건

- 초·중등 12년 이상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등학교 졸업(예정)한 자 또는 이와 동등 학력을 소지한 자 중에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외국소재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2. 외국소재 고등학교에서 국내고등학교로 전학하여 국내고등학교를 졸업(예정)한 자

2) 지원자격

- 우리나라 학제(12학년)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국외근무자의 자녀로서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출입국사실증명서', '국외근무 확인서류', '재학기간 증명서류' 등을 종합 검토하여 재외국민 특별전형 관련 국외체류기간을 인정함

구분		내용
부모	재직조건	· 부모 중 한 명이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 국외 근무/사업/영업하여야 함
	체류조건	· 부모 중 한 명이 국외 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그의 배우자 및 자녀(학생)와 함께 국외에 체류하여야 함 - 자녀(학생)의 재학기간 중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2/3이상을 배우자와 함께 해당 국가에서 체류하여야 함 * 체류일수 산정시, 소수점 절사
자녀 (학생)	재학조건	· 부모 중 한 명이 국외 근무/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부모가 국외 근무/사업/영업하는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하여야 함 -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365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단,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체류조건	· 본인의 재학기간 중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3/4이상을 부모가 국외 근무/사업/영업하는 국가에서 체류하여야 함 * 체류일수 산정시, 소수점 절사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 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날까지를 각각 1개 학년·1개년으로 간주하고, 이를 기준으로 국외 재학·체류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3) 지원자격 세부인정 기준

구 분	주요 인정 기준
고등학교 졸업 자격인정 기준 시점	○ 졸업예정자: 우리대학에 입학하는 날이 속하는 학기개시 전일까지 (단, 해당국의 학제상 학년도와 학기 개시일이 우리나라보다 1개월이 늦은 국가(일본 등)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1개월의 재학 예정 범위 내에서 외국학교 재학기간을 인정함) ○ 기 졸업자: 고등학교 졸업년도와 관계없이 지원가능
외국 학교의 인정기준	○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만을 인정함 ○ 국내소재 외국인 학교는 외국학교로 인정하지 않음 ○ 초·중·고 교육과정의 재학기간만을 인정하며, ESL(English as a second or foreign language) 과정 등 어학연수 목적의 교육기관, 유치원과정은 외국학교로 인정하지 않음 ○ 국내·외 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 학력인정방법은 인정하지 않음
국외재학기간	○ 해당 학년도의 온전한 학기를 정상적으로 이수하고, 학기이수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또는 성적)을 취득하였을 경우 해당학기를 재학기간으로 인정 ○ 수업결손 없이 2개 학기를 이수한 경우 1년을 재학기간으로 인정(단, 3학기제 또는 쿼터제인 경우 3학기 또는 4학기 이수) ○ 1개 학년 산정기준 ①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365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 단,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②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로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365일)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 우리나라 학제(12년)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학제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기간의 결손은 1개 학기(6개월)에 한하여 인정함(총 23학기, 11년 6개월 이상 충족) ○ 동일 학년(학기)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 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단 학제차이로 인한 중복은 재학이 연속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복수 발생 인정 가능) · 누락된 학기는 중복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2개 학기 이상 연속 중복 학기의 경우 누락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중복 학기 등 지원자격 검토 시 제출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정·편법·악용 사례로 판명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구 분	주요 인정 기준																																																																																																	
국외재학기간	예시) 동일 학기 중복과 관련하여 지원자격 충족 사례 [D: 국내학교, A: 외국학교] <table><tr><th>학년</th><th colspan="2">1</th><th colspan="2">2</th><th colspan="2">3</th><th colspan="2">4</th><th colspan="2">5</th><th colspan="2">6</th><th colspan="2">7</th><th colspan="2">8</th><th colspan="2">9</th><th colspan="2">10</th><th colspan="2">11</th><th colspan="2">12</th></tr><tr><th>학기</th><th>1</th><th>2</th><th>1</th><th>2</th><th>1</th><th>2</th><th>1</th><th>2</th><th>1</th><th>2</th><th>1</th><th>2</th><th>1</th><th>2</th><th>1</th><th>2</th><th>1</th><th>2</th><th>1</th><th>2</th><th>1</th><th>2</th></tr><tr><td>재학</td><td>D</td><td>D</td><td>D</td><td>D</td><td></td><td></td><td></td><td></td><td>D</td><td>D</td><td>D</td><td>D</td><td>D</td><td></td><td></td><td></td><td>D</td><td>D</td><td>D</td><td></td><td></td><td></td><td></td></tr><tr><td>기간</td><td></td><td></td><td></td><td>A</td><td>A</td><td>A</td><td>A</td><td>누락</td><td></td><td></td><td></td><td></td><td>A</td><td>A</td><td>A</td><td>A</td><td>누락</td><td></td><td></td><td></td><td>누락</td><td>A</td><td>A</td><td>A</td></tr></table> 중복학기 G2-2로 G4-2 대체 가능 중복학기 G7-1로 G9-1 대체 가능 G11-1학제차이로 인한 누락으로 인정	학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재학	D	D	D	D					D	D	D	D	D				D	D	D					기간				A	A	A	A	누락					A	A	A	A	누락				누락	A	A	A
	학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재학	D	D	D	D					D	D	D	D	D				D	D	D																																																																														
기간				A	A	A	A	누락					A	A	A	A	누락				누락	A	A	A																																																																										
※ 위 예시는 학제차이 로 인한 경우에 한함																																																																																																		
○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 상 월반(전·편입학 시 월반은 미인정) 또는 조기졸업 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중·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으로 인하여 부족하게 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함																																																																																																		
국외 체류일수 조건	○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국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하여야 함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하여 학기 개시일로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365일) 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국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하여야 함																																																																																																	
○ 체류일수 산정 시, 소수점 절사																																																																																																		
○ 학기종료일 이후 학사일정이 없는 경우(방학 등)에도 체류기간의 축소·변동은 없음																																																																																																		
국외 근무자 등의 근무 형식	○ 외국에 상근하는 경우에 국한(교육·연수·출장 형식의 단기 근무자는 제외)																																																																																																	
부모의 근무기간, 체류기간	○ 국외 체류기간: 출입국증명서상 해당국의 거주기간에서 국내체류일수를 제외한 기간																																																																																																	
○ 국외 근무기간: 증명서상(재학 및 경력증명서) 국외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하는 기간																																																																																																		
※ 통산 3년(1,095일) 이상 근무 기준에 예외는 없음																																																																																																		
○ 부모가 이혼한 경우 친권에 관계없이 부모 중 1인을 기준으로 함(해당자는 관련 증빙 서류 제출)																																																																																																		
※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이혼일 이전까지의 자격 조건은 충족해야 함																																																																																																		

※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의 「지원자격에 따른 부모 및 학생의 세부 지원자격」 적용

3-2. 정원 제한 없는 모집

가. 전 교육과정 해외 이수자

1) 지원자격

-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에 상응하는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재외국민, 외국인, 귀화허가를 받은 결혼이주민

※ 이중(복수)국적자는 「국적법」 제11조의 2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으로 지원해야 함

※ **부·모·지원자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외국인 특별전형”(국제교류과 담당 041-850-0862)으로 지원해야 함**

※ 전 교육과정 해외 이수자의 지원 자격 대상자는 학생 본인으로서, 보호자의 국외에서의 거주 및 체류기간 등은 자격요건 심사대상이 아님

※ 외국인인 경우 합격 후 비자발급을 위해 관련 서류를 별도 요구할 수 있음

2) 지원자격 세부인정 기준

구 분	주요 인정 기준
고등학교 졸업 자격인정 기준 시점	○ 졸업예정자: 우리대학에 입학하는 날이 속하는 학기개시 전일까지 (단, 해당국의 학제상 학년도와 학기 개시일이 우리나라보다 1개월이 늦은 국가(일본 등)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1개월의 재학 예정 범위 내에서 외국학교 재학기간을 인정함) ○ 기 졸업자: 고등학교 졸업년도와 관계없이 지원가능
외국 학교의 인정기준	○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만을 인정함 ○ 국내소재 외국인 학교는 외국학교로 인정하지 않음 ○ 초·중·고 교육과정의 재학기간만을 인정하며, ESL(English as a second or foreign language) 과정 등 어학연수 목적의 교육기관, 유치원과정은 외국학교로 인정하지 않음 ○ 국내·외 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 학력인정방법은 인정하지 않음
재학기간의 기준	○ 국외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 국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국내 초·중등학교 재학여부와 관계없이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함 ① 국외 동일 학년제에서 초·중·고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 이수 연한이 12년이 되지 않더라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함 ② 학년제가 다른 2개 이상 학교의 경우 우리나라 학년제에 준하여 12년 이상을 이수해야 함. 단,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의 기간만큼은 해당국 대학에서 이수한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함

구 분	주요 인정 기준		
	예시) 학년제가 다른 2개 이상 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인정기준		
	학년제	인정여부 및 인정조건	비고
	10학년 이하	미인정	단,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 의 기간만큼은 해당국 대학에서 이수한 과정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
	11학년제	초·중등과정의 마지막 3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가능 ※ 단, 2개국 이상에서 11년 이상의 초·중등 과정을 이수해야 인정	
	12학년제		
	13학년 이상	10~12학년 또는 11~13학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가능	
* 해당국 학년제의 총 이수 연수와 교육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12년간의 차이 연수			
○ 학제가 다른 2개 학교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등 과정을 이수한 자가 전·편입학 하는 과정에서 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누락된 경우 1학기(6개월) 이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함 ○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 상 월반 또는 조기졸업 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중·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으로 인하여 부족하게 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함(전·편입학 시 월반은 미인정) ○ 동일 학년(학기)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 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단, 학제차이로 인한 중복은 재학이 연속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복수 발생 인정 가능) - 누락된 학기는 중복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2개 학기 이상 연속된 중복 학기의 경우 누락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단, 중복 학기 등 지원자격 검토 시 제출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정·편법·악용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 국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방학, 국외 학교 및 해당 국가에서 정한 휴일에 국내에 임시 체류하는 경우에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함			

3) 어학 자격기준(외국인인 경우)

- 모든 모집단위: 국립국제교육원 시행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취득한 자, 국내 대학 부설 한국어교육기관의 정규 한국어 과정 3급 이상 수료자
- 국제학부: 국립국제교육원 시행 한국어 능력시험(TOPIK) 2급 이상 취득하고 영어능력시험 최소 기준*을 충족한 자

* 영어능력시험 최소 기준: TOEFL 530(CBT 197, iBT 71, PBT 530), IELTS 5.5, CEFR B2, New TEPS 326, TOEIC 700점 또는 그에 상응하는 국가 공인민간영어능력시험

※ 영어를 모국어 또는 법적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의 국적자는 영어능력시험 최소기준 면제

나. 북한이탈주민

1) 지원자격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로서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따라 동등 이상 학력을 취득한 자

2) 지원자격 세부인정 기준

구 분	주요 인정 기준
북한이탈주민의 학력인정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도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북한이탈주민 ○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거 동등 이상 학력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는 자 ※ 검정고시 이수자 지원 가능
고등학교 졸업 자격인정 기준 시점	○ 졸업예정자: 우리대학에 입학하는 날이 속하는 학기개시 전일까지 ○ 기 졸업자: 고등학교 졸업년도와 관계없이 지원가능

3-3. 코로나19 관련 및 중동지역 상황 관련 특례

가. 코로나19 관련

- 관련근거: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및 교육부 대입정책과-2750(2020.6.24.) "'코로나19' 관련 2021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운영 권고사항 안내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인하여 재직기간, 재학기간, 체류기간 등 지원자격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와 관련한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지원자격을 인정할 수 있음
 -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수업 진행시, 체류국가와 관계없이 재학기간 인정(단, 해당기간 국내 체류시 해외체류기간으로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예외인정 사유 증빙시 인정할 수 있음)
- ※ 대학은 지원자격 예외 인정을 위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예: 학교 온라인수업 전환 안내문 또는 온라인 수업 이수 확인서 등)

나. 중동지역 상황 관련 특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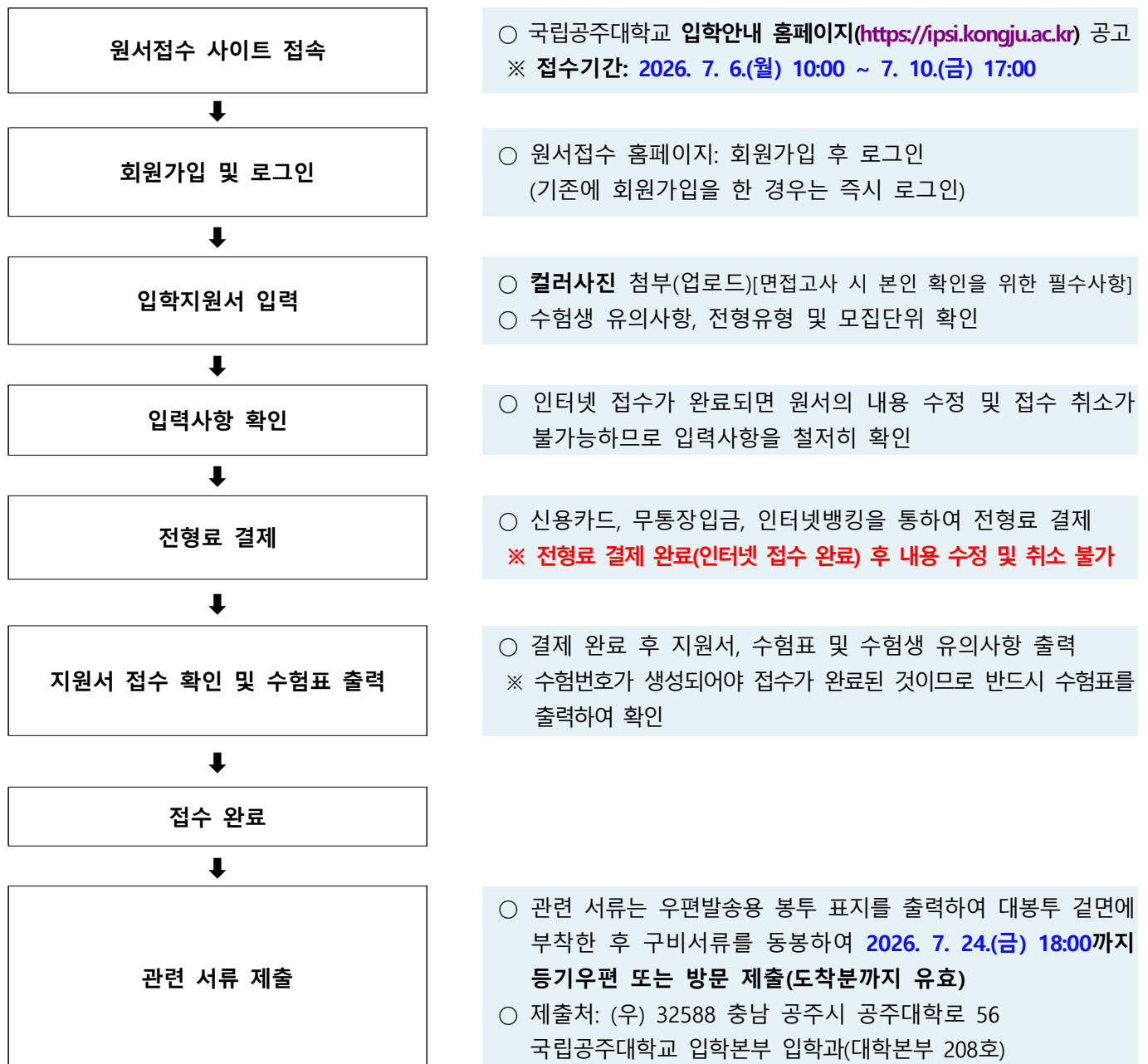
- 관련근거: 교육부 대입정책과-1222(2026.3.11.) "중동지역 재외국민 특별전형 운영 권고사항(수정)"
- 적용 국가: 이란, 이스라엘, 중동 7개국(바레인, 아랍에미리트, 오만, 카타르, 쿠웨이트, 사우디 아라비아 일부지역*, 요르단 일부지역**)
- * 라스 타누라 지역(아람코 정유시설 위치), 샤이바 유전지대 반경 20km, 프린스술탄 공군기지 반경 20km
- ** 자르카 시 동편 경계선의 동부 지역
- 조기귀국 또는 일시귀국으로 인한 지원자격(재직, 재학, 체류기간) 미충족 사유 발생시 적용 특례

구분	특례 적용 내용
재직요건 (보호자)	- (해외파견재직자) 기존 파견서상 재직기간이 3년(1,095일)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파견 취소 또는 파견철수명령일부터 국내학기 기준 2026학년도 1학기까지 등의 재직기간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음 - (자영업자, 현지취업자) 이란, 이스라엘 및 중동 7개국 현지 근무기록 또는 납세기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26.3.8. 이후(단, 이란, 이스라엘은 '26.3.5. 이후)부터 국내학기 기준 2026학년도 1학기까지 등의 재직기간을 인정할 수 있음
재학요건 (학생)	- 국내학기 기준 2026학년도 1학기까지 등의 학생 재학요건을 인정할 수 있음
체류요건 (학부모, 학생)	- 국내 기준 최대 2026학년도 1학기까지 등의 학생 및 부모의 체류기간을 인정할 수 있음 ※ 체류기간 인정 특례 적용은 '26.3.8.(단, 이란, 이스라엘은 '26.3.5.)부터 가능

- ※ 대학은 특례 적용과 관련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예: 파견 재직자 파견 취소 및 파견철수명령 공문 등)
- ※ 구체적인 요건인정 기간 등 개별 사례에 대한 판단은 대학이 중동지역 현지 및 지원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음
- ※ 중동지역 상황 악화로 인한 제3국 체류 및 재학에 대한 인정은 증빙자료 및 상황을 참작하여 판단할 수 있음

4. 지원 절차 및 방법

- 재외국민 및 외국인전형(입학정원의 2% 이내) 지원시 유의사항: 대학 수시모집(교육대학 포함, 산업대학·전문대학 제외)의 모든 전형에서 지원횟수 6회를 초과하여 지원할 경우 접수취소 처리됨.
- ※ 다만 북한이탈주민,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전교육과정 이수자 및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30세 이상을 선발하는 특별전형은 수시모집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수시모집 지원횟수(6회) 제한, 정시모집 군별 지원횟수 제한, 모집시기 간 복수지원 금지사항을 적용하지 않음
- 원서접수 마감 시한인 **2026. 7. 10.(금) 17:00** 이후에는 원서접수가 불가하며, 입력한 내용이 사실과 달라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5. 제출 서류

가. 지원자격별 제출서류

(○ : 제출, - : 미제출, △ : 해당자 제출)

제출서류명	지원 자격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전교육과정 해외이수자	북한 이탈주민	비고
[서식 1] 지원자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	○	○	- 원서접수 시 인터넷 입력 후 서류제출 기간에 출력하여 서명 후 제출
[서식 2] 입학원서(인터넷 접수 후 출력물)		○	○	○	
[서식 3] 자격심사신청서(한글 작성)		○	○	-	- 원서접수 시 인터넷 입력 후 서류제출 기간에 출력하여 서명 후 제출 - 국내·외 초·중·고등학교 모든 학교의 재학사향 입력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	△	
고등학교 학교 생활기록부 사본(학교장 직인 날인)		△	△	△	☑ 국내고 및 재외 한국 고등학교 재학사실이 있는 경우 필수 제출
초·중·고 재학증명서		○	○	-	- 재학기간 명기
초·중·고 성적증명서		○	○	-	- 국내 및 재외 한국학교는 학교생활기록부 제출 가능
외국학교 학사일정표(School Calendar)		○	○	-	- 국외 중·고교 과정 학기시작일/종료일, 방학시작일/종료일 필수 기재 - 해당 외국학교의 홈페이지 출력물(웹사 이트 주소 표기), 브로셔 등의 제출도 가능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학생)	-	-	- (부모 이혼 시)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 증명서, 본인 기준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 (부모 사망 시) 사망자 기본증명서, 친권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여권 사본		○ (부·모·학생)	○ (학생)	-	- 제출자의 성명, 생년월일, 국적 및 사진 부분 복사
[서식 4] 사실증명발급·열람신청 위임장		○ (부·모·학생)	○ (학생)	-	- 발급대상자(위임한 사람), 위임장(발급·열람 대상자) 부분만 작성(기타 출입국 조회 기간, 위임장의 연월일 기재 금지)
출입국사실증명서		○ (부·모·학생)	○ (학생)	-	-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 발행
외국국적 증명(여권, 시민권)		△ (외국인)	△ (외국인)	-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재외공관 및 외교부 발행)		○ (부·모·학생)	△ (재외국민)		- 재외국민인 경우 필수 제출
부모 중 1인 재직(경력)증명서(국외근무경력 명시)		△	-	-	☑ 국외파견 재직자 및 현지 취업자 제출서류
국외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 (외국정부 발급)		△	-	-	☑ 현지취업자와 자영업자 제출서류
체류기간 중 국외 재직회사의 법인세 납부이력		△	-	-	☑ 현지 취업자 제출서류
자영업자의 국외 세금납부증명서		△	-	-	☑ 현지 자영업자 제출서류
파견 등 발령공문 사본(해당자)		△	-	-	☑ 국외파견 재직자 제출서류(해당자)
해외직접투자신고서 또는 해외지사설치신고서 또는 현지법인 금융기관 투자신고서(해당자)		△	-	-	☑ 국외파견 재직자 제출서류(해당자)
외국인 등록증(해당자)		△ (외국인)	△ (외국인)	-	
어학능력 입증서류		-	△ (외국인)	-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서류만 인정
재정능력 입증서류		△ (외국인)	△ (외국인)		- 국내·외 은행 예금잔고 증명서 원본 (KRW 기준 1,600만원 이상)
귀화허가 입증서류			△ (결혼 이주민)		- 지원자 기본증명서(상세)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	○	
통일부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시·군·구청 발행)		-	-	△	
학력 인정 증명서(시·도 교육청 발급) 또는 고등 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대입전형용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	○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대입전형용) 제출자는 증명서에 최종 재학 고등학교명이 기재된 경우 해당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1부 추가 제출
[서식 5] 사유서(필요시 작성)		△	△	△	

※ 추후 사실 확인 등에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자(△) 제출서류의 경우 반드시
비고란의 제출대상자를 확인한 후 서류 제출 요망

나. 서류 제출기한 및 방법

- 1) 제출서류 중 입학원서,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자격심사신청서, 사실증명발급열람·신청위임장, 사유서는 인터넷 원서접수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 작성한 후 제출 바라며, 제출서류 발송용 봉투 표지(원서 접수 시 출력 가능)를 부착하여 발송하여야 함

※ [서식 1~5]에 서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제출

- 2) 필요한 서류는 지정기일까지 우리대학 지정장소로 등기우편, 택배 또는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제출기한: **2026. 7. 24.(금) 18:00**까지(도착분까지 유효)
 - 제출장소: 충남 공주시 공주대학로 56 국립공주대학교 입학본부 입학과(대학본부 208호 우)32588
 - 방문 제출은 평일만 가능하며, 점심시간(12:00~13:00)은 접수 불가
 - 서류접수 이후 추가 서류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우리대학에서 정한 기한 내 미제출 시 불합격 처리함

다.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1) 모든 서류는 원칙적으로 원본으로 제출해야 함. **국외에서 발급 받은 모든 서류는 아포스티유 인증 또는 영사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한국어나 영어로 작성되지 않은 서류는 반드시 공증 받은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함

※ 단, 교육부 인가 재외 한국학교 발급 서류의 경우 학교장 직인으로 갈음

※ 외국학교 학사일정표는 홈페이지 출력물, 브로셔 등의 제출도 가능하며 아포스티유 인증(또는 영사확인) 면제함

- 2) 부득이 사본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 ① 아포스티유 인증(또는 영사확인)을 득한 원본을 사본과 함께 지참하여 입학본부에서 원본대조필을 받거나 ② 사본 문서 공증 후 아포스티유 인증(또는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할 수 있으며, 공증 증명서 및 아포스티유 증명서(또는 영사확인 증명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원본이어야 함

- 3)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과 관련하여 국내 및 재외 한국고등학교 출신자는 학교 생활기록부를 필수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고 출신자 및 검정고시 출신자인 경우에도 국내고 또는 재외한국학교(고등학교 과정) 재학사실이 있는 경우 학교 생활기록부 1부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함. 학교 생활기록부가 있음에도 미제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합격(입학)이 취소될 수 있음

※ 학교생활기록부 사본은 학교 발급시 학교장 직인 날인 필수이며, 정부24에서 발급시 진본 타임스탬프가 표시되어야 함

- 4) 코로나-19, 조기졸업, 월반, 성적 및 재학기록 폐지 등 특이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해당 학교에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받아 [서식 5]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

- 5) 국외 학교의 경우 불가피하게 초·중학교 재학 및 성적증명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해당 국가 또는 학교의 정책에 따라 대체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대학은 대체서류 등을 통해 학력인정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 6) 지원자격별 제출서류 이외에 불필요한 서류(상장, 수상메달 등)은 제출이 불필요함

- 7) 지원자가 외국인인 경우 재정능력 입증서류로 국내·외 은행 예금잔고 증명서 원본(KRW 기준 1,600만원 이상)을 제출하여야 함
 - ※ 예금잔고증명서는 제출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한 것으로 하되, 유효기간이 있을 경우 유효기간까지 인정함(단, 발급일이 6개월 이내일 것)
 - ※ 재정능력 입증 서류는 본인 또는 부모의 잔고증명서를 제출
- 8) 본 대학에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학생의 재학(졸업), 부모 및 학생의 체류, 국외 근무자 재직/사업/영업, 국적 상실·취득 등 지원 자격 검증 및 학교폭력 조치사항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발급기관에 확인을 의뢰할 수 있음.
- 9) 추가 제출 요청한 서류를 대학이 정한 기한 내 미제출 시 지원자격 부적격으로 불합격 처리될 수 있음

라. 추가서류 제출(최종 합격 및 등록자 대상)

- 1) 2027. 2. 28.(입학일 전일)까지 포함해야 『지원자격』이 충족되는 경우, 최종 합격자는 지원자 졸업증명서 및 보호자의 재직(경력)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지원 자격 서류를 대학이 지정한 기간 내에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합격자 발표시 입학안내 홈페이지에 안내)
 - ※ 국외에서 발급 받은 모든 서류는 위 다. 2) 유의사항 반드시 참고하여 제출 요망
- 2) 특별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일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등 합격 이후에도 지원자격이 충족되지 못할 경우 합격 또는 입학이 취소될 수 있음

6. 전형 방법 및 선발 원칙

가. 전형 방법

전형요소	전형총점	비고
면접고사		
100점(100%)	100점	· 지원자격에 대한 적합여부 심사 후 적격자에 한하여 면접 실시

나. 면접고사 평가방법

- 1) 2명의 면접위원이 지원자 1명씩 실시
 - 2) 면접시간은 10분 내외로 실시
 - 3) 지원자 제출서류(성적증명서 등) 확인 면접
 - 4)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학생증 등), 수험표로 본인 확인
- ※ 국외 체류자 중 사전신청자에 한하여 비대면 화상 면접 실시
- 비대면 화상 면접은 정해진 시간 내 자리 이석 등을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면접고사 미응시로 불합격 처리

다. 면접 평가영역 및 기준

평가영역		평가요소	배점
1영역	전공적성	전공 학문에 대한 깊은 이해, 관심 및 비전 여부	25점
2영역	문제해결능력	논리성·창의성	25점
3영역	의사소통능력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자신의 의견을 명료하게 표현하는 능력	25점
(공통) 기본점수		-	25점
계			100점

라.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감점

1) 감점 방법

-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이 기록되어 있을 경우 총점(100점)에서 아래 기준에 따라 감점
- 다수의 조치사항이 기록되어 있을 경우 합산하여 감점
- 단, 동일 사건에 대하여 여러 개의 조치가 병과된 경우에는 가장 중한 조치사항만 적용하여 감점

2) 감점 기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횟수별 감점 점수				
	1회	2회	3회	4회	5회
제1호(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1	1.5	2	2.5	3
제2호(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2	2.5	3	3.5	4
제3호(학교에서의 봉사)	3	3.5	4	4.5	5
제4호(사회봉사)	4	4.5	5	5.5	6
제5호(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5	5.5	6	6.5	7
제6호(출석정지)	6	6.5	7	7.5	8
제7호(학급교체)	7	7.5	8	8.5	9
제8호(전학)	8	8.5	9	9.5	10
제9호(퇴학처분)	10				

마. 선발 원칙

- 모집단위별 선발 가능인원의 범위에서 총점 순위에 따라 적정인원을 합격자로 선발함
※ 전 교육과정 국외 이수자 전형, 북한이탈주민 전형은 정원 제한 없음
- 지원자격 미달자(서류 미제출자 포함), 면접고사 결시자(미응시자), 면접 점수 평균 60점 미만인 자, 전형총점 60점 미만인 자는 불합격 처리함
- 소수점 이하의 성적은 소수점 아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처리함
- 동점자 처리기준

구분	합격자 선발시
입학정원의 2%이내 모집 전형	1순위: 전형 총점 고득점자
	2순위: 면접평가 1영역 고득점자
	3순위: 면접평가 2영역 고득점자
	4순위: 면접평가 3영역 고득점자
정원 제한이 없는 전형	동점자 모두 선발

- 본 요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립공주대학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함

7. 합격자 발표

가. 합격자 발표 일정

- 1) 최초 합격자: **2026. 9. 11.(금) 18:00 이전** 대학 홈페이지에 공고(개별 통보 하지 않음)
- 2) 총원 합격자: 후보자가 있을 경우 대학 입학안내 홈페이지 별도 공고함

나. 합격자 발표 방법

- 1) 합격자에 대한 공지사항은 국립공주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https://ipsi.kongju.ac.kr>)에 공고하며, 개별 통보 하지 않음
- 2) 합격자 발표 후 수험생 본인의 합격여부를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수험생 본인에게 있음

8. 합격자 등록

가. 합격자 문서등록

- 1) **합격자**는 우리 대학 홈페이지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 **문서등록**
- 2) 문서등록 기간: **2026. 12. 21.(월) ~ 12. 23.(수) (3일)**
※ 총원 합격자 발표 및 등록 세부 일정(시간)은 추후 대학 입학 홈페이지에 공고(개별 통보 없음)
- 3) 유의사항
 - 합격자 발표 후 기간내 문서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등록의사가 없는 자로 간주하며 별도의 절차 없이 합격이 취소됨
 - 문서등록 및 최종 등록금 납부를 모두 완료하여야 최종합격자로 처리되며, 문서등록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합격자 최종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합격이 취소됨

나. 합격자 최종 등록

- 1) 납부 금액: 미책정(2027학년도 등록금은 2027. 2. 10. 최종합격자 등록금 고지서에 반영 예정)

[참고] 2026학년도(전년도) 등록금

2026학년도 기준 학부 신입생 등록금			
구분	인문·사회계열	자연계열	예능계열, 공학계열
대한민국 국적자	1,599,000원	1,940,000원	2,115,000원
외국 국적자	1,734,000원	2,108,000원	2,299,000원

※ 스포츠과학과는 자연계열 등록금 적용

- 2) 납부기간: **2027. 2. 10.(수) 09:00 ~ 2. 12.(금) 16:00**
- 3) 납부방법: 국립공주대학교 홈페이지에서 등록금 고지서를 개별 출력하여 농협은행 전국 각 지점에서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이체
※ 장학금 등의 면제로 등록금액이 '0원'인 경우에도 반드시 합격자발표시스템에 장학등록(0원 납부)을 처리하여야 등록으로 처리되며, 미등록 시 합격이 취소됨

다. 등록포기

- 1) 합격자가 등록한 후 타 대학에 (충원)합격한 경우 등록을 원하지 않는 대학에 등록포기의사를 즉시 전달하여야 함
- 2) 등록포기 절차: 추후 국립공주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https://ipsi.kongju.ac.kr>)에 공고

9. 전형료

가. 전형료: 60,000원(1단계 서류 자격심사: 30,000원, 2단계 면접전형: 30,000원)

- 1) 온라인 원서 접수 시 전형료 결제까지 이루어져야 접수가 완료됨
- 2) 원서 접수를 마감한 후에는 접수를 취소할 수 없으며, 아래 사유 외에는 전형료 환불 불가

나. 전형료 반환 사유 및 금액

- 1)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 과납한 금액
- 2) 대학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전형료 전액
-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전형료 전액
- 4)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 납부한 전형료 전액
※ 증빙서류를 2026. 8. 28.(금)까지 제출한 자에 한하여 그 사유가 타당한 경우 환불함
- 5) 면접대상자 선발에서 제외된 자(1단계 서류전형 탈락자): 2단계 면접 전형료에 해당하는 30,000원 반환
※ 원서접수 시 입력한 반환 계좌로 반환하며, 면접 대상으로 선발된 자(1단계 합격자)가 면접에 불참할 시에는 반환하지 않음

다. 모든 입학전형 종료 후 사용하고 남은 전형료 잔액이 발생할 경우 지원자별로 납부한 입학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2027년 4월 30일까지)

- 1) 학교를 직접 방문하는 방법과 반환 대상자가 인터넷 원서접수시 입력한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으며, 계좌입금 선택 시 정확한 환불계좌를 입력하여야 함
- 2) 반환할 금액에서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차감하고 반환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 반환할 금액 이상이면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음

10. 지원자 유의사항

가. 복수지원 관련 사항

- 1) 재외국민 및 외국인전형(입학정원의 2% 이내)의 경우 수시모집에 해당하므로 대학 수시모집의 모든 전형에서 6회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타 대학에 지원한 횟수를 포함하며, 산업대학·전문대학에 지원한 경우는 제외)
- 2) 수시모집 합격자(최초합격자 및 충원합격자 포함)는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대학(전문대학, 산업대학 포함)의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정시 및

추가모집 지원이 취소됨

- 3) 다만 북한이탈주민,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전교육과정 이수자 및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30세 이상을 선발하는 특별전형은 모집시기를 구분하지 않음에 따라 수시모집 지원횟수 (6회) 제한, 정시모집 군별 지원횟수 제한, 모집시기 간 복수지원 금지 사항을 적용하지 않음

나. 이중등록 금지 관련 사항

- 1) 모집시기별로 지원하여 입학할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에 합격한 자는 1개의 대학에만 등록(문서등록, 예치금 납부 등)하여야 함
- 2) 수시모집 합격자는 수시모집 등록 기간 내에 1개 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함. 수시모집 등록에서 이중등록자(문서등록 또는 예치금 납부자 포함)가 있는 경우 등록기간 내에 포기하지 않으면 이중 등록 위반으로 모든 입학이 무효로 처리됨
- 3) 전형 종료 후 신입생의 지원·등록 현황을 검색하여 금지된 복수 지원, 이중 등록 사실 등이 확인될 경우 합격을 모두 무효로 하며 입학 이후라도 사실이 확인되면 입학 허가를 취소함

다. 기타 유의사항

- 1) **합격자 발표 전 혹은 발표 후에도 입학사정에 사용된 전형자료에 주요사항이 누락되거나 허위 또는 부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국허가가 되지 아니할 경우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음**
- 2) 1)에 따라 입학이 취소되는 경우 해당자가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함. 단,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립공주대학교 학칙」에 근거하여 반환함
- 3) 본교 및 타 대학에서 입학이 취소된 자는 학칙에 따라 입학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간 본교에 입학할 수 없음
- 4) 대입지원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하거나 이에 협조하여 공정한 학생선발 업무를 방해한 경우, 입학 취소 및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5)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마감기한까지 미도착한 경우 및 본 요강의 지원 자격에 적합하지 않은 자가 지원한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6) 지정된 등록기간에 미등록(문서등록 포함)시 별도의 절차 없이 합격이 취소됨
- 7) 입학전형 성적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8) 지원자는 수험기간 중 국립공주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 게시·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제반 지시를 따라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9) 면접 대상자는 지정된 시간까지 면접고사장에 도착하여야 하며, 면접고사 시 수험표와 신분증 지참 바람
※ 면접고사 장소는 추후 국립공주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에 공고함
- 10) 수험생은 면접고사장 내에서 이동전화 등 일체의 통신 및 전자기기를 휴대할 수 없음
- 11) 원서접수 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수험생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립공주대학교 입학본부(041-850-0111)에 반드시 알려야 함

12) 학부 단위로 입학한 경우 재학 중 대학이 정한 배정 기준에 따라 전공을 배정함

13)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립공주대학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함

14) 기타 입학에 관한 사항은 입학본부로 문의하시기 바람

※ 주소: 우편번호)32588, 충남 공주시 공주대학로 56 국립공주대학교 입학본부 입학과(대학본부 208호)

※ 전화번호: 국립공주대학교 입학본부 입학과 ☎ (041)850-8014, FAX: (041)850-8903

1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대학 입학전형을 위해 아래와 같이 지원자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함

- 이름,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출신고교,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지원자 및 부모 출국 정보, 부모의 국외 재직 사실, 환불계좌 등

나. 수집된 개인정보는 대학의 입학, 장학, 학사, 통계업무 및 대학에서 제공하는 기타 안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및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함

제공받는 곳	제공정보	제공목적	보유/이용기간
국립 공주 대학교	대학본부 (학사과, 학생복지과, 재무과, 교무과 등)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추가)연락처, 지원내용(전형, 모집단위 등), 성적 자료, 고교명 등	처리 목적 달성 시 까지
	단과대학 및 학과(부)	성명, 주소, (추가)연락처 등	
	학생생활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지원내용 (전형, 모집단위 등), 성적 자료 등	
	국제교류과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장애학생지원센터	성명, (추가)연락처, 지원내용(전형, 모집단위 등), 장애유형, 장애정도 등 * 장애가 있는 경우에 한함	
제3자 제공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원내용(전형, 모집단위 등) 등	지원 및 등록 위반자 확인 등
	국세청	성명, 주민등록번호, 최종고교학력	연말정산 전형료 세액공제

- 아울러, 「공통원서접수시스템」 사용을 위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다음과 같이 원서접수를 위탁함

수탁자(위탁대상자)	위탁업무 내용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 공통원서의 관리 및 전달 등	처리목적 달성 시 또는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다. 관련 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1조 등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8조 등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3조

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는 원서접수 시 필수항목으로 받고 있으며, '동의 안 함' 선택 시 원서접수 불가함.

[서식 1]

2027학년도 국립공주대학교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지원자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재외국민 및 외국인(입학정원 2% 이내)]

모집단위				
수험번호		성명	(인 또는 서명)	

구분	제출서류	제출여부		비고
		제출	미제출	
공통서류	[서식 1] 지원자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서식 2] 입학원서(인터넷 원서접수 후 출력하여 제출)			
	[서식 3] 자격심사신청서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고등학교 학교 생활기록부 사본(학교장 직인 날인) ※ 국내고 또는 재외 한국 고등학교 재학사실이 있는 자 필수 제출			
	국내·외 초·중·고 재학증명서			- 재학기간 명기 - 국내 및 재외 한국 학교는 학교생활기록부 제출 가능
	국내·외 초·중·고 성적증명서			
	외국학교 학사일정표			
	가족관계증명서(부,모,학생 기준 각각 발급-총3장)			
	여권 사본(부,모,학생)			
	[서식 4] 사실증명발급신청 위임장(부,모,학생)			
	출입국사실증명서(부,모,학생)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부,모,학생)(재외공관 및 외교부 발행)			
부 또는 모 국외 근무 증빙 서류	부모 중 1인 재직(경력)증명서(국외근무경력 명시)			국외파견 재직자, 현지 취업자
	국외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외국정부 발급)			현지취업자와 자영업자
	체류기간 중 국외 재직회사의 법인세 납부이력			현지 취업자
	자영업자의 국외 세금납부증명서			현지 자영업자
	파견 등 발령공문 사본(해당자)			국외파견 재직자
	해외직접투자신고서 또는 해외지사설치신고서 또는 현지법인 금융기관 투자신고서(해당자)			국외파견 재직자
추가 서류	[서식 5] 사유서(학기 및 수업결손 등)			해당자
	외국인 등록증(외국인)			해당자
	재정능력 입증서류(외국인)			
기타서류	예) 조기졸업 증명서류			
	예) 개명 증명서류			

- 반드시 모집요강 13쪽 참고하여 서류 확인 후 제출여부에 체크하여 제출
- [서식 1~5]은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한 뒤 서명 후 제출
- 제출서류는 체크리스트 순서대로 정렬하여 제출
- 기타서류는 조기졸업, 개명 증명서류 등 항목을 수기 작성하여 제출

2027학년도 국립공주대학교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지원자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전 교육과정 해외 이수자, 북한이탈주민]

모집단위			
수험번호		성 명	(인 또는 서명)

구분	제출서류	제출여부		비고
		제출	미제출	
전 교육과정 해외 이수자	[서식 1] 지원자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서식 2] 입학원서(인터넷 원서접수 후 출력하여 제출)			
	[서식 3] 자격심사신청서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초·중·고 재학증명서			재학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에 재학기간 명기 재외 한국학교는 학교생활기록부 제출 가능
	초·중·고 성적증명서			
	외국학교 학사일정표			
	여권 사본(학생)			
	[서식 4] 사실증명발급신청 위임장(학생)			
	출입국사실증명서(학생)			
	외국국적 증명(여권, 시민권)(외국인)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재외국민 학생)			
	외국인 등록증(외국인)			
	어학능력 입증서류(외국인)			
	재정능력 입증서류(외국인)			
	귀화허가 입증서류(결혼 이주민)			지원자 기본증명서(상세)
북한이탈주민	[서식 1] 지원자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서식 2] 입학원서(인터넷 원서접수 후 출력하여 제출)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북한이탈주민 교육대상자 증명서			
	학력 인정증명서 또는 고등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또는 대입전형용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대입전형용 검정고시 합격증명서에 최종 재학 고등학교명이 기재된 경우 학교 생활기록부 1부 추가제출
추가서류	[서식 5] 사유서(학기 및 수업결손 등)			
	고등학교 학교 생활기록부 사본(학교장 직인날인)			국내고 또는 재외 한국 고등학교 재학사실이 있는 자 필수 제출
기타서류	예) 조기졸업 증명서류			
	예) 개명 증명서류			

- 반드시 모집요강 13쪽 참고하여 서류 확인 후 제출여부에 체크하여 제출
- [서식 1~5]은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한 뒤 서명 후 제출
- 제출서류는 체크리스트 순서대로 정렬하여 제출
- 기타서류는 조기졸업, 개명 증명서류 등 항목을 수기 작성하여 제출

[서식 2] 인터넷 원서접수 후 출력하여 제출

2027학년도 국립공주대학교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입학지원서

수험번호				지원 전형		☐ 재외국민 및 외국인 ☐ 전 교육과정 해외 이수자 ☐ 북한이탈주민			
성명	한글		성별	남	생년월일	년 월 일		사진 (3cm×4cm)	
	영문			여	주민등록번호	-			
지원 대학 및 학부(과)		대학명		학부(과)		모집단위 코드			
학력	구분		기간		학교명		학교소재지		정규 학교 여부
							국가명	도시명	
	초등학교		~		○○초, ○○초				
	중학교		~		○○중				
	고등학교(졸업, 졸업예정)		~		○○고, ○○school				
대학교(졸업, 재학 중)		~		○○대					
어학 자격기준		※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자(외국인)							
비대면 면접 신청		☐ 신청							
출생국				외국(한국외) 거주기간					
국적				주소					
본인 연락처		휴대전화:			자택		전화번호:		
추가 연락처 1		연락처:			추가 연락처 3		연락처:		
추가 연락처 2		연락처:			추가 연락처 4		연락처:		
지원자 E-mail					출신고 전화번호				
출신고 홈페이지 주소									
전형료 환불 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복수지원 안내		재외국민 및 외국인전형(입학정원의 2% 이내) 지원시 유의사항: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제외) 수시모집의 모든 전형에서 지원횟수 6회를 초과하여 지원할 경우 접수취소 처리됨. ※ 북한이탈주민 및 전교육과정이수전형은 수시모집 6회 제한 제외							
귀 대학의 2027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에 지원하고자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대학 입학 지원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지원자 (인 또는 서명)									
국립공주대학교총장 귀하									

2027학년도 국립공주대학교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2027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지원 자격 심사신청서

1. 지원전형: 재외국민 / 전 교육과정 해외 이수자 ※ 해당란에 ○표

2. 지원자 인적사항

모집단위	영어영문학 과(부)	수험번호	
성 명	김공주	성 별	여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국 적	대한민국
출신고등학교	○○고	고등학교 마지막 학년(고3)학기 개시일	2026.3.2

3. 보호자 인적사항

성 명	김고마	관 계	부	직 업	회사원
직 장 명	(주)○○○○사			직 위	과장
주 소	○○시 ○○구 ○○로			전 화	○○○-○○○○-○○○○
본사 인사부서 주소				인사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화:()

4. 국외학교 기재란 (한국에 소재한 학교는 미기재)

구 분	학 교 명	출 신 학 교 연 락 처			
		주 소	전 화	팩 스	홈페이지
초등학교	○○초				
중학교	○○중				
고등학교	○○고				

※ 학교명은 공식명칭으로 기재하시기 바라며, 전화 및 팩스번호는 국가 및 지역번호까지 기재

5. 수학기간기록표

모집단위 :	수험번호 :	성명 :
--------	--------	------

가. 지원자 학력사항 기재 : 연도순으로 수학한 모든 학교(초등학교~고등학교)를 기재

학 교 명	재학기간		학교소재지		해당하는 학년, 학기에 ● 표시 (한 학기를 완전히 끝내지 못했을 경우 ▲표시)																									
	기 간	재학년월	국가명	도시명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7학년		8학년		9학년		10학년		11학년		12학년		13학년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 . . ~ . . .	년 월																												
	. . . ~ . . .	년 월																												
	. . . ~ . . .	년 월																												
	. . . ~ . . .	년 월																												
	. . . ~ . . .	년 월																												
	. . . ~ . . .	년 월																												
	. . . ~ . . .	년 월																												
	. . . ~ . . .	년 월																												

※ 수학기간은 성적 및 졸업(예정)증명서 상의 기간을 기재함. (15일 이상은 1개월로 간주하고, 15일 미만은 버림)

초등학교과정 (1-6학년)	국내	년 월	중학교과정 (7-9학년)	년 월	고등학교과정 [10-12(13)학년]	년 월
	국외	년 월		년 월		년 월

※ 국내학교에 해당되는 학년 학기 환산표

국내학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환산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7학년	8학년	9학년	10학년	11학년	12학년

나. 특이사항 (월반, 조기졸업, 학기 성적기록 누락, 휴학 등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만 아래의 표에 기재한 후 [서식 5] 사유서 작성하여 제출)

내 용	기 간	학년 / 학기	사 유

6. 부,모 (또는 보호자) 외국 근무 및 거주기간(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및 경력증명서, 지원자 성적 및 졸업(예정)증명서에 의하여 작성)

▶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자 전형은 생략 가능

모집단위 :	수험번호 :	성명 :
--------	--------	------

구 분	외국 근무 및 거주 기간		소재지		- 보호자의 외국 근무 및 거주기간과 학생의 재학기간이 일치하는 학년, 학기에 ● 표시 - 한 학기를 완전히 끝내지 못하고 보호자의 외국 근무 및 거주 종료시는 ▲ 표시																									
	근무기간	거주기간	국가명	도시명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7학년		8학년		9학년		10학년		11학년		12학년		13학년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부(父) 성 명)	~	~																												
	~	~																												
	~	~																												
	~	~																												
	~	~																												
(모(母) 성 명)	~	~																												
	~	~																												
	~	~																												
	~	~																												
	~	~																												

※ 거주기간: 재학 또는 근무를 위해 해당국에 거주한 기간으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에 기재된 기간

※ 근무기간: 근무를 위해 해당국에 거주한 기간으로 재직증명서에 기재된 기간

※ 상기 작성된 부,모(또는 보호자) 외국 근무 · 거주기간, 수학기간기록표 및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지원자의 지원자격을 심사하며, 수학기간 인정 및 해석은 본교의 해석에 의함

7. 지원자, 보호자의 외국 체류기간(출입국증명서의 외국 체류기간)

- ▶ 지원자, 보호자(부, 모)의 외국 체류기간 기재(학생의 외국학교 재학기간에 부, 모가 외국에서 체류한 기간을 기재)
 - ※ 15일 이상은 1개월로 간주하고, 15일 미만은 버림
 - ※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자 전형은 지원자 내용만 기재

구분	출입국증명서의 외국 체류기간(지원자의 외국학교 재학기간 전후)				비 고
	출국일		입국일	체류기간	
지원자 ()		~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	
	총 체류기간			년 월	
부(父) ()		~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	
	총 체류기간			년 월	
모(母) ()		~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	
	총 체류기간			년 월	

*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지원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출신학교, 연락처(전화, 휴대폰) 등의 개인정보는 대입입학전형 관련 이외 목적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파기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 하십니까?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 지원자격 심사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지원자

(인 또는 서명)

[서식 4] 빨간색 네모 박스만 작성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8호의2서식] <개정 2025. 5. 30.>

(앞쪽)

사실증명 발급·열람 신청서

APPLICATION FOR ISSUANCE OF / ACCESS TO CERTIFICATE OF FACT

(약칭: 사실증명신청서, 약호:A322)

※ 본인이 직접 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정부24(www.gov.kr)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신청 시에는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신분증만 제시하면 됩니다.

Free online application available at the government website (www.gov.kr) for the issuance of your own Certificate of Fact. Those visiting an immigration office will be required to present only their ID cards without having to complete this form.

※ 뒤쪽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하기 바랍니다.(Please fill out this form by referring to the notes on the back page.)

접수번호 (Receipt No.)	접수일 (Date of Receipt)	발급일 (Date of Issuance)	처리기간 (Processing Period)	즉시 (Immediately)
발급대상자 (위임한 사람) Principal (Authorizing Person)	성명 (Full Name)	연락처 (Phone No.)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Resident Registration No.(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No. or Overseas Korean Resident No.)			
증명종류 Type of Certificate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통 Certificate of Fact on Entry and Departure () copy(ies)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통 Certificate of Fact on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 copy(ies) ☐ 외국인등록 열람 ()건 Access to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 time(s)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의 영문 성명 병기 신청 여부 (국민만 해당)

* This field is only for Korean citizens.

☐ 포함 ☐ 미포함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경우, 과거 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외국인 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성명, 체류지 및 체류자격 변경 이력 포함 여부, 체류지 영문표기 여부

Previous registration number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or Overseas Korean Resident number), name, address or status of sojourn, address in English to be shown on the Certificate of Fact on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과거 등록번호 Previous Registration Number

☐ 포함 Yes ☐ 미포함 No

과거 성명 변경 사항 Previous Name

☐ 포함 Yes ☐ 미포함 No

과거 체류지 변동 사항 Previous Address

☐ 포함 Yes ☐ 미포함 No

과거 체류자격 변동 사항 Previous Status of Sojourn

☐ 포함 Yes ☐ 미포함 No

체류지 영문표기 여부 Address in English

☐ 표기 Yes ☐ 미표기 No

출입국 조회기간 (Reference Period for Entry and Departure Record)

. . . 부터(from) . . . 까지(to)

용도 (Purpose)

신청인 (위임받은 사람) Applicant (Authorized Person)	성명 (Full Name)	생년월일(Date of Birth)
	연락처 (Phone No.)	발급대상자와의 관계 (Relationship to Principal)

「출입국관리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증명의 발급·열람을 신청합니다.

I hereby apply for the issuance of / access to Certificate of Fact in accordance with Article 88 of the Immigration Act and Article 75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Immigration Act.

년(Year) 월(Month) 일(Day)

신청인 (Name of Applicant)

(서명 또는 인)(Signature or Seal)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의 장 / 재외공관장 귀하
To the Chief of ○○ Immigration Office(Branch Office) / the Head of ○○ Si·Gun·Gu or Eup·Myeon·Dong / the Head of Overseas Diplomatic Mission

위임장 (Power of Attorney)

위 발급대상자(위임한 사람)는 위와 같은 사실증명의 발급·열람 신청 및 수령에 관한 사항을 위 신청인 (위임받은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I, the above Principal (authorizing person), hereby authorize the above applicant (authorized person) to apply for and receive the issuance of / access to the Certificate of Fact.

년(Year) 월(Month) 일(Day)

발급·열람 대상자(위임한 사람)
Name of Principal(Authorizing Person)

(서명 또는 인)
(Signature or Seal)

210mm×297mm[백상지(80 g/㎡) 또는 중질지(80 g/㎡)]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Consent for Administrative Information Sharing)

본인은 사실증명 발급 또는 열람 수수료 면제와 관련해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전자적으로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I hereby consent to the electronic verification of the applicant's required documents, in relation to the exemption of fees for the issuance of or access to certificate of fact, through the shared use of administrative information by the public official in charge in accordance with Article 36 Paragraph 1 of the Electronic Government Act.

* In case of refusal to consent to the verification by the public official in charge, the applicant must submit the relevant documents in person.

신청인(Name of Applicant)

(서명 또는 인)(Signature or Seal)

유의사항 Notice

1.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점검표(V)'로 표시합니다.

Do not complete the shaded sections, and please place a check mark for applicable brackets[].

2.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앞쪽 신청인의 성명란에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을, 주민등록번호란에 법인등록번호를, 전화번호란에 연락 가능한 담당자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각각 적기 바랍니다.

If you are a corporate applicant, please write the name of the corporation and the president for the "Full Name" of applicant, corporation registration number for "Resident Registration No.", and name and telephone number of the person in charge for "Telephone No." on the front side of the application form.

3. 사실증명의 발급 신청 및 외국인등록 열람은 본인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ligible applicants for the issuance of Certificate of Fact or access to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shall be limited to the principal, his/her legal representative or authorized person.

4. 다음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다음의 사람이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의 발급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발급·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In accordance with Article 75(3, 4)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Immigration Act, those falling under the following categories may apply for the issuance of Certificate of Fact on Entry and Departure or for the issuance of or access to Certificate of Fact on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가. 행방불명, 사망 등으로 본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명백하게 본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1) 본인의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2) 본인의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본인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1)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Where a principal is incapable of expressing intentions due to his/her unknown whereabouts or death, or where it is obvious that the certificate will be used for benefits of the principal:

1) Spouse, immediate relatives or siblings of the principal

2) Immediate relatives or siblings of the principal's spouse [only when the spouse is deceased and the principal does not have any of those listed in the category 1)]

- 나. 본인인 외국인이 완전 출국한 경우: **본인인 외국인을 고용하였던 자 또는 그 대리인**

Where a non-Korean principal has permanently left Korea:

- An employer of the principal or the authorized agent of the employer

- 다. 채권·채무관계에 관한 재판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 연체채권 회수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 해당 외국인과 채권·채무 관계에 있는 경우(기한 경과나 기한의 이익 상실 등으로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에 한정하며, 채무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발급받거나 열람하려는 채권자**

Where a favorable ruling is confirmed in a trial on a debtor and creditor relationship, where the Certification is needed by financial companies that fall under any of the items of the subparagraph 3 of the attached table 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Resident Registration Act for the purpose of collecting overdue debts, or where there is a debtor and creditor relationship with the foreigner concerned (only when a debt becomes overdue or an event of default occurs that allows a lender to demand full repayment earlier than an original due date, and the amount of debt is more than 1 million KRW):

- Creditor who intend to receive or access the Certificate of Fact on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of the foreigner concerned

※ 채권·채무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차용증, 어음 등은 송금 영수증, 공증, 확정일자 등의 공적 증거를 담보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 The contract paper, promissory note and note that prove the debtor and creditor relationship shall be attached by the collateral documents that may guarantee official evidence such as remittance receipt, notarization and fixed date stamp affixed on the agreement, etc.

- 라.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Other persons deemed necessary by the Minister of Justice for the public interest.

5.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사본)을 첨부하고 신청인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Authorized persons shall present his/her own ID card and the application shall be presented with the Power of Attorney and the ID card (or a copy) of the authorizing person.

※ 다른 사람의 서명 또는 인장의 도용 등으로 허위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증명서를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You may be subject to punishment under applicable laws, if you apply for or receive the Certificate of Fact by submitting a fraudulent Power of Attorney signed by another individual or falsely done with a stolen seal.

6. 위임은 작성한 날부터 6개월까지만 유효합니다.

The Power of Attorney shall remain effective for six months from the day of authorization.

7. 국민은 1961.1.1.부터, 외국인은 1979.1.1.부터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이 가능합니다.

Records on this certificate only cover the entry/departures from January 1, 1961, for Korean nationals and from January 1, 1979, for Foreigners.

[서식 5]

2027학년도 국립공주대학교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사 유 서

모집단위	수험번호			성 명				
사유명 (해당사항에 체크)	학기결손	학기중복	월반	휴학	조기졸업	국내체류	코로나-19	기타
세부사항(해당 학기, 발생 사유 등 구체적으로 기재)								
[증빙자료]								
①				②				
③				④				
위 기재된 모든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허위 기재에 따른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보호자 성명: (인 또는 서명)								
지원자(본인) 성명: (인 또는 서명)								
국립공주대학교 총장 귀하								

- ※ 사유서 제출 시 유의사항
- 해당 사유 표기 후 하단에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특례적용 관련 재직·재학·체류 미충족 사유 포함)
 - 사유서에 기재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해당 학교(기관)에서 발급한 공식 서류
 - 증빙자료 미제출 시 사유서에 기재된 사항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